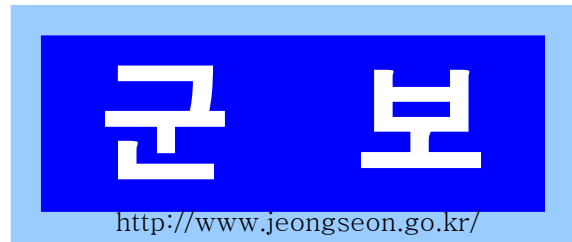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4호 2008. 7. 16 (수)

【고 시】

- 고시제2008-50호 하천점용 허가고시3
- 고시제2008-51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4
- 고시제2008-52호 하천점용사용 허가고시5
- 고시제2008-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6
- 고시제2008-54호 하천점용허가고시7
- 고시제2008-55호 하천점용사용 허가고시8
- 고시제2008-56호 하천점용사용 허가고시9
- 고시제2008-57호 하천점용사용 허가고시10
- 고시제2008-60호 하천점용사용 허가고시 11
- 고시제2008-61호 하천점용 허가고시12

【공 고】

- 공고제2008-389호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3
- 공고제2008-392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
- 공고제2008-393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26
- 공고제2008-394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분 조정·공시 32
- 공고제2008-395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34
- 공고제2008-402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36
- 공고제2008-410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37
- 공고제2008-414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38
- 공고제2008-415호 취득세·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40

정선군고시 제2008-50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6월 30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장		
	대 표 자		주 소	태백시 상장동 86-3번지
하 천 명		한강(지방1급)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641-30번지 일원		
	면 적	A=2,000m ² V=2,000m ³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6월 30일 ~ 2008년 10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겨울철 제설작업용 방화사 채취		
※ 설계도서 : 별도보관				

정선군고시 제2008-51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선군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60회 정선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6월 30일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06,476,271	247,823,514	58,652,757	23.67%
일반회계	273,440,392	216,681,345	56,759,047	26.19%
기타특별회계	20,989,118	21,254,494	△265,376	△1.25%
의료급여기금	569,757	585,631	△15,874	△2.71%
정선군임대아파트운영	1,145,859	1,103,759	42,100	3.81%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85,581	83,370	2,211	2.65%
기반시설부담금	557,942	1,013,000	△455,058	△44.92%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4,013	503,900	113	0.02%
주택사업	331,073	229,600	101,473	44.20%
주차장	857,006	637,760	219,246	34.38%
수질개선	16,937,887	17,097,474	△159,587	△0.93%
상수도사업(공기업)	12,046,761	9,887,675	2,159,086	21.84%

정선군고시 제2008-52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7월 02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주)LG파워콤강원지사		
	대 표 자	박 순 복	주 소	원주시 태장2동 데이콤
하 천 명		한강(지방1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번지의외 1필지		
	허가량	A=1.5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6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통신용전주(6본)설치		

정선군고시 제2008-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7월 03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국유림관리소		
	대 표 자	정선국유림 관리소장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국유림사무소
하 천 명		공유수면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북면 여량리 11-1구 외 5필지		
	허가량	A=508.4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6월 27일 ~ 2008년 07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2008년 국유사방댐공사를 위한 자재운반로		

정선군고시 제2008-54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 년 06월 03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별 첨”		
	대 표 자		주 소	“별 첨”
하 천 명		“별 첨”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별 첨”		
	면 적	“별 첨”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7월 04일 ~ 2008년 09월 04일		
	목 적 및 사 유	하천부지내 퇴적토 하상(대행)준설		
※ 설계도서 : 별도보관				

정선군고시 제2008-55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7월 07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변 근 호	주 소	정선군 북면 구절리 243-13번지
하 천 명		송천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북면 구절리 243-1천(243번지선)		
	허가량	A=1,613㎡(잡종지) A=1,006㎡(전)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6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잡종지 및 농경지(전)		

정선군고시 제2008-56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7월 08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전 제 윤	주 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7-8번지
하 천 명		봉산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북면 유천리 742-8번지선(산319천)		
	허가량	A=315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7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주택대지		

정선군고시 제2008-57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7월 08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전 제 윤	주 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7-8번지
하 천 명		봉산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북면 유천리 산277번지선(산319천)		
	허가량	A=955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7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전		

정선군고시 제2008-60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7월 10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주)강나루영농조합		
	대 표 자	전 영 철	주 소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325번지
하 천 명		한강(지방1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442-1번지의외 1필지		
	허가량	A=862㎡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7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마을공동 농촌체험장시설신축에 따른 진출입부지		

정선군고시 제2008-61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 년 07월 11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 표 자		주 소	원주시 단계로 283번지
하 천 명		지장천(지방2급)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68번지 일원		
	면 적	A=5,790m ²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7월 11일 ~ 2008년 07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기존38국도 통제에 따른 임시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하천 일시점용		
※ 설계도서 : 별도보관				

정선군공고 제2008-389호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06월 30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고한읍사무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를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로 개정

나. 고한읍사무소 소재지 변경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를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로 한다.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 표중 고한읍사무소의 소재지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392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7월 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 정 취 지

- 가.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 나.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가. 직접조사 대상법인 축소
- 나.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규정 신설
- 다. 서면조사서 간소화

3. 의 견 제 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은 2008년 7월 21일까지 정선군수 (참조 : 재무과장 ☎560-2282)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제5호 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성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조 업 () 건 설 업 () 판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정 선 군 수 귀 하

① (297mm²×210mm²)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정선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233-800

※ 문의사항 전화 : (033) 560-228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강원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한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 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강원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강원도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a)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액 (d)	기납부 세 액 ②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b)					

※ 서식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강원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강원도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 제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계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계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④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다른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393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7월 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 제 정 취 지

- 가.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운영함으로써
- 나. 우리군 공금의 출납·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효율적인 공금운영 도모

2. 제정 주요내용

- 가. 금고 지정방법·금고의 수·약정기간 규정
- 나. 금고지정기준 규정
-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및 지정절차 등 규정

3. 의 건 제 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은 2008년 7월 21일까지 정선군수 (참조 : 재무과장 ☎560-2282)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라 함은 법 제77조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중 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라 함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채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군이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3. 주민 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 적격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만이 소재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군금고 업무담당자 서기는 동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금고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와 게시판 및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 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을 금융감독원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세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액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등을 매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이 정하는 것 외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소 계	3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6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5점)	25	
	소 계	15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라.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5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5	
	라.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OCR센터 운영능력	5	
	소 계	10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5	
	나. 군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정선군공고 제2008-394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분 조정·공시

2008.1.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주택가격의 적정성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08년 06월 30일

정 선 군 수

☐ 2008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분 조정·공시

1. 가격기준일 : 2008년 1월 1일
2. 조정·공시대상 : 정선읍 봉양리 220-3번지의외 18호
3.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조정가격)
4. 공시방법 : 군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구제신청방법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청 재무과 과표팀(☎033-560-21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분 조정내역

◆ 가격기준일 : 2008년 1월 1일

(단위 : 천원)

심의 번호	주택소재지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건물 구조	전년가격	현년가격	이의신청 요지	조정내용 (검증내용)	조정가격	비 고
	법정동	법정리	지번									
1	정선읍	봉양리	220-3	162	65.25	벽돌	28,200	29,300	하향요구	하향조정	27,100	
2	정선읍	애산리	722	291	57.2	목조	13,100	17,600	하향요구	하향조정	16,000	
3	정선읍	회동리	486-1	559	32.5	목조	7,760	8,030	하향요구	기 각	8,030	
4	정선읍	광하리	416-3	374	23.4	목조	5,830	8,890	하향요구	하향조정	8,240	
5	고한읍	고한리	73-20	99	69.6	블록/경 철	29,400	25,000	상향요구	상향조정	33,800	
6	동면	석곡리	1104-3	660	100.96	블록	-	34,500	하향요구	기 각	34,500	
7	북평면	북평리	694-6	315	70.17	블록	28,900	27,100	상향요구	기 각	27,100	
8	북평면	남평리	1294-1 (가동)	225.6	109.12	목구조	48,800	49,300	하향요구	기 각	49,300	
9	북평면	남평리	1294-1 (나동)	261.4	96.36	목구조	63,400	58,500	하향요구	기 각	58,500	
10	북평면	숙암리	47	721	62.2	목조	6,170	10,300	하향요구	하향조정	7,370	
11	북평면	숙암리	306	684	39.6	목조	5,660	12,400	하향요구	하향조정	11,600	
12	사북읍	사북리	356-72	187.1	51.9	컨테 이너	49,700	71,300	하향요구	기 각	71,300	
13	사북읍	사북리	391-3	93	23.92	블록	13,700	14,200	상향요구	기 각	14,200	
14	사북읍	사북리	397-24	199.9	33	목조	33,700	34,300	상향요구	상향조정	37,000	
15	신동읍	방제리	443-47	659	88.2	벽돌	36,500	35,400	상향요구	상향조정	35,700	
16	남면	유평리	245	283	104.58	연와	37,700	37,100	상향요구	상향조정	37,800	
17	북면	여량리	98-9	76	45.97	철근	12,800	14,600	하향요구	하향조정	12,200	
18	북면	여량리	149-7	803.7	100.32	경철	47,300	60,600	하향요구	하향조정	56,100	
19	임계면	골지리	497-2	757	98	목조	12,100	12,600	하향요구	기 각	12,600	

정선군공고 제2008-395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2008.4.30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정·공시합니다.

2008년 06월 30일

정 선 군 수

☐ 2008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1. 가격기준일 : 2008년 1월 1일
2. 정정호수 :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외 1호
3.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정정가격)
4. 공시방법 : 군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이의신청방법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께서는 2008. 7.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관하여는 정선군청 재무과 과표팀(☎033-560-214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개별주택가격 정정내역(정선군)

◇ 가격기준일 : 2008년 1월 1일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구분	법정리	지번	지목	토지		건물		건물 구조	주요 정정내용	결정가격	정정가격 (검증가격)	부동산평가위원회		비 고 (지리적위치)
					면적	산정 면적	연면적	주거 면적					심의가격	심의결과	
1	당초	사북리	284-1	전	525	525	59.5	59.5	블록	지번정정	61,600				사북연세병원 북동측인근
	정정	사북리	산76	임	15,435	131.7	52.7	52.7	목조			9,300	9,300	통과	
2	당초	유천리	191-1	전	2,664	168	67.2	67.2	목조	지번정정	3,660				유천마을회관 서측인근
	정정	유천리	191-2	전	2,314	168	67.2	67.2	목조			4,090	4,090	통과	

정선군공고 제2008-4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07월 03일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8.07.03~ 2008.07.16(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재무과(033-560-2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송봉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주공사 북아파트 2동107호 (6통2반)	취득세(부동산)외1	345,090	부동산	수취인부재
박찬희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71 (2통3반)	자동차세(자동차)외 2	617,350	부동산	수취인불명
심지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북실아파트 101동503호(4통1반)	주민세(개인균등)외 10	786,400	부동산	수취인부재
정민수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138 (1통3반)	취득세(부동산)외16	948,640	부동산	수취인부재
고옥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4-4(6통3반)	재산세(토지)외23	2,685,630	부동산	폐문부재
우희순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39-10 삼익비치맨션 101동 904호(9통1반)	종합토지세외 4건	2,152,640	부동산	수취인부재
손성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204-4(4통6반)	취득세(부동산)외1	1,270,450	부동산	수취인불명
서봉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5 한가람아파트 205동 1204호(20통4반)	종합토지세외 4	197,260	부동산	수취인부재
이태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10 고한주공아파트 102동 1405호(8통6반)	주민세(종합소득)	1,842,120	부동산	수취인부재

정선군공고 제2008-410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납부독촉 고지)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7월 09일

정 선 군 수

1. 공고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법인또는 주민번호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원성건설(주) (지상구)	145211- *****	충남 천안시 성정동 1271 로렉스빌 405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98-10-21)	건설기술자 의 취업 및 퇴직사항 미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2항 제1호의2	1백만원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기간 : 2008. 7. 10. ~ 2008. 7. 30

3. 공시송달장소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4. 공시송달사유 : 행정처분명령서 송달 불가(이사감 등 연락 불능)

5. 공고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관리부서(☎033-560-2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선군공고 제2008-414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사전에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7월 11일

정 선 군 수

1. 예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 행정예고취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3. 설치장소

읍 면 별	설 치 위 치	지 번	비 고
정선읍	정선읍 봉양1리(365의류매장 앞)	봉양리345-1번지선	
	정선읍 봉양2리(주차장 앞)	봉양리357-7번지선	
	정선읍 봉양8리(금광아파트 앞)	봉양리47-55번지선	
	정선읍 애산1리(여성회관 앞)	애산리606-2번지선	
사북읍	사북읍 사북4리(스타호텔 앞)	사북리354-18번지선	
	사북읍 사북7리(유명약국 뒤)	사북리366-144번지선	
	사북읍 사북7리(초등학교 교량)	사북리452-66번지선	
남 면	남면 무릉3리(태양빌라 앞)	무릉리614-67번지선	
임계면	임계면 송계3리(구시장)	송계리723-15번지선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인근 주민은 2008년 7월 26일까지 정선군수(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267 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

－ 전화번호 : 033-560-2336(Fax 560-2589)

－ E-mail : msw6028@hanmail.net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선군공고 제2008-415호

공 시 송 달

가. 성 명 : 박순덕 등 14명 (내역별첨)

나. 주소또는거소 :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182 (2/4) 등 14개소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 독촉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2008년 6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8년 6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8년 8월 7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8년 07월 11일

정 선 군 수

2008년 6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서

(단위 : 건, 면)

세 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취득세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182 (2통4반)	박순덕	건물 고한읍 고한리 16-31번지 건물 830.57㎡ 신규(축)	13,652,190	주소,거소,영업소불명	2008-07-11	2008-08-07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아파트 101동 303호 (5통2반)	서명조	동박골식당	6,180	주소,거소,영업소불명	2008-07-11	2008-08-07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새터건설	고한중앙아파트철거공사	3,090	주소,거소,영업소불명	2008-07-11	2008-08-07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새터건설	고한중앙아파트철거공사	3,090	주소,거소,영업소불명	2008-07-11	2008-08-07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104-2 (3반)	최분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회 -7209(2008.04.16)	12,600	이사감	2008-07-11	2008-08-07
재산세	강원 정선군 남면 광덕리 443	최도경	남면 광덕리 530 1호 외 3건 (면적 1,349.4㎡)(2006년분)	3,660	주소,거소,영업소불명	2008-07-11	2008-08-07
자동차세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40-2 (1통)	김재수	10버1123(비영업용,배기량:1998)[경감율:50%]	74,200	주소,거소,영업소불명	2008-07-11	2008-08-07
자동차세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994 상명빌딩 302호 (9통1반)	송은석	50나8193(비영업용,배기량:1498)[경감율:50%]	35,860	이사감	2008-07-11	2008-08-07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1-8 (9통2반)	장미희	53러9522(비영업용,배기량:1997)[경감율:50%]	77,850	이사감	2008-07-11	2008-08-07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북실 아파트 102동 103호 (4통2반)	박대현	90모 1699(비영업용,적재정량:1000)	8,660	이사감	2008-07-11	2008-08-07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5-16 (17통6반)	윤성욱	95다8242(비영업용,적재정량:1000)	7,290	이사감	2008-07-11	2008-08-07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478-1 (1통2반)	장승호	강원27노9561(비영업용,배기량:2476,승차정원:7) [경감율:25%]	101,680	이사감	2008-07-11	2008-08-07
종합토지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99	김봉선	정선읍 애산리 164 (면적 1,292.0㎡)(2003년분)	2,550	주소,거소,영업소불명	2008-07-11	2008-08-07
종합토지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99	김봉선	정선읍 애산리 164 (면적 1,292.0㎡)(2004년분)	3,430	주소,거소,영업소불명	2008-07-11	2008-08-07